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76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서울 경제상황 진단 방법을 현실화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기경보지수”를 삭제하고 “정량·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 나.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 다. “경제위기대책본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 세분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조례안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각 호에 대응하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일부수용) 제5조제1항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전반에 관한 포괄적 조항으로 구체적 특성을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제6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에 반영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2. 15. ~ 3. 6.)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조기경보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며 경제위기 단계별로 체계적 대응을 수행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의 신설을 통해 동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경위

- 서울시는 동 조례 제정 전부터 자체적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서울연구원에서 개발한 소비경기지수·종합경기지수 등을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해 왔음¹⁾.
- 그러나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업의 매출 감소, 가계부채 및 실업률 증가 등 서울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됨.
-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서울시는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서울경제 위기 진단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

1) 서울경제 모니터링 영역 : 서울시의 소비경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창업, 고용동향 등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영역이며 2021년부터 서울연구원 자체연구과제로 전환 운영함.

- 그리고 동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위기진단지표를 개발 (2021년)하고 지역경기 및 금융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음(2022.3월~현재).

<서울특별시 위기진단 지표>

2022.3월~현재

연번	부문	지표
1	지역경기	- 서울소비경기지수(소매, 음식 등 소비중심업종 매출액) - 생활밀접업종(26개 자영업 경기지수, 매출액 증감) - 상관동향(개업, 폐업률, 임대시세 등)
2	금융위험	- 가계(대출잔액, 대출자 및 연체자수 등) - 소상공인(매출액, 대출잔액, 업체수) - 중소기업(대출잔액, 장기연체기업 수 등)

- 또한 서울시는 경기, 기업, 소비, 물가, 노동시장, 민간신용, 부동산 시장 등 7개 부문에 대한 경제동향을 파악하여 서울경제동향을 발간(2023.8월~현재)하고, 연 2회(상·하반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정성조사 방식으로 서울경제 위기 정도를 진단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특별시 경제동향 지표>

2023.8월~현재

연번	부문	주요지표
1	경기	- 경기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수출·수입액 -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 - 해외여행객 출입·국 현황
2	기업	- 기업수, 창업기업수 -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지수 - 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
3	소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서울소비경기지수(서울연구원)
4	물가	-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 월별 소비자물가
5	노동시장	- 취업자수 -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실업률
6	민간신용	- 예금은행 지역별 가계대출 - DSR 70%이상 개인 비율 - 예금은행 지역별 연체율 - 소상공인 대출잔액 등
7	부동산시장	- 매매/전세/월세가격지수 - 아파트 준공·분양 실적 - 주택매매거래현황 - 전월세 임대거래량

다. 개정안의 검토

- 현행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은 ‘조기경보지수를 포함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개발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경우에도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경제위기 유형 다양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변수 출현으로 정형적 상설위원회를 통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관련 조항²⁾은 사문화된 상황임.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현행 조례의 현실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기경보지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안 제2조제3호·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2)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실무지원단))

<p>1. 2. (생략)</p> <p>3.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 · 분석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p> <p>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 ·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 · 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p> <p>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p> <p>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p> <p>2. ~ 5. (생략)</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13조·제14조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이란 ----- ----- -----.</p> <p>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p> <p><삭제></p> <p>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p> <p>제14조·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p>
--	--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상설위원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제상황점검 위원회의 규모를 기존의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안 제9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행정1부시장과 경제정책실장으로 하향 조정 하면서(안 제9조제2항) 비상설화(안 제8조·제11조제2항)하여 실무차원의 탄력적인 소집과 해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체계적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생략)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들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20명 -----
-----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

③ -----
----- 임명 또는 ----- . <후단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④·⑤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거나 -----
-----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15일 ----- .
-----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니터링과 위기분석,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현실성

미흡에 따른 실효성 상실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방안(예시)>

단계	상황예시	대응체계
정상	- 지표상 이상징후가 일시적인 경우	- 상황판단회의(서울연구원, 경제정책과)
주의	- 지표상 이상징후 3개월 지속 시 - 상황판단회의의 '주의' 단계 판단	- 경제상황점검위원회(비상설) 운영
위기	- 지표상 이상징후 전방위 확대 시 - 위원회의 '위기' 단계 판단	- 경제위기대책본부 가동(시장 주체)

- 다만 위기 진단 및 경제 동향 모니터링은 전문가와 대응체계 가동의 시작점이 되므로 끊임없는 지표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구체적 위기단계 판단기준 및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